

설명회 제02호

최근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사항

2025. 7. 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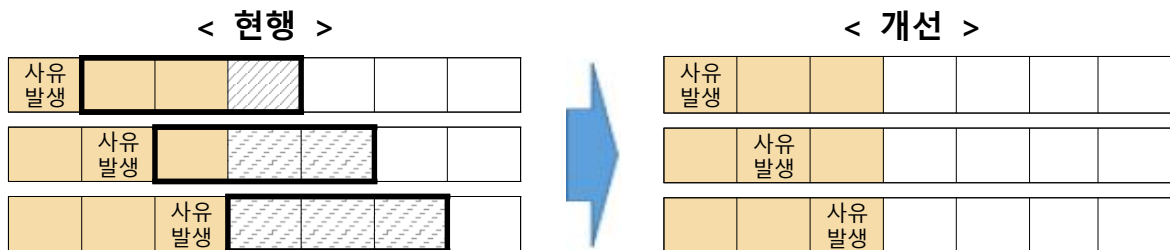


회계감독국

I 감사인 지정 방식 합리화

가 주기적 지정 중 직권지정 중복부담 완화

- (연행)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 시 무조건 3년간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어,
 - 이미 지정한 독립적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직권지정으로 지정기간 연장* 및 감사인 교체** 등 감사부담 증가
 - * 예) 주기적 지정 3년차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은 총 6년으로 확대
 - ** 주기적 지정기간(3년) 이후 연장된 지정기간(4~6년차) 동안 지정감사인 변경
- ⇒ (개선) 원칙적으로 **주기적 지정기간 중** 발생한 직권지정 사유는 **지정기간 연장 없이** 現 지정감사인(주기적 지정)이 감사를 실시
 - ※ 금융당국에서 現 지정감사인에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사실은 통지
 - 다만, 감리조치 등 회계부정 또는 부실감사 관련 직권지정 사유는 **현행과 동일**하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



* (색갈) 지정 대상 (굵은 선) 추가 지정 대상 (빗금) 지정기간 연장 가능한 사업연도

주기적 지정기간 중 발생한 직권지정 사유별 추가지정 예외사유

구분	분류	직권 지정사유	개수 (조문기준)
① 추가지정 유지 (15)	자발적 지정 요청	회사, 주주·채권자 요청, 상장예정법인, 타 법령에 따른 요청	4
	회계부정 관련성	감리조치, 관리종목, 감사계약 해지, 감사인 자료제출요구 거부, 부정행위 지연보고, 횡령 등 공소제기, 최대주주 변경(3년 2회 이상),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운영	8
	부실감사 가능성 (법률 위반)	재무제표 대리작성, 무자격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,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한 미달	3
② 추가지정 예외 (12)	회계부정 관련성 ↓	재무기준 미달, 대표이사 변경(3년 3회 이상)	2
	단순절차 위반*	감사인 선임의무·선임절차 위반,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, 감사인 선임보고의무 위반,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보장 미흡,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 미흡,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등	10

* 동 사유는 관계기관 합동 회계제도 보완방안(23.6월)에 따라 직권지정 → 과태료 전환 입법 진행 중

나 직권지정 시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

- (현행)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비상장사에 대해 직권지정할 경우 지정기간은 1~2년*으로, 지정 종료 시 감사인 교체가 의무화
 - * [감사인 미선임, 감사인 선임·해임절차 위반 등] 1년, [동일사유 2년 연속 위반] 2년
- 잦은 감사인 교체*로 해당 기업·산업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선임되어,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기업부담도 가중
 - * 기업들은 "지정감사인 초도감사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(42.6%)"을 지적 (상장협 설문조사, '23년)
- ⇒ (개선) 기업이 원할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없이 최대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선택권 도입
 - 다만, 연장선택권은 지정감사 독립성을 위해 지정시점에 행사토록 제한*
 - * 지정감사 기간(1~2년)이 끝나는 시점에 연장선택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지정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 차단

지정기간 연장선택 여부에 따른 감사인 변경 사례

20×1	20×2	20×3	20×4	20×5	20×6
감사인 A	A	A	B	현행 C → 개선 B	현행 C → 개선 B
자유선임			직권 지정	연장선택권 행사 시 감사인 교체 X	

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합리화

- (현행) 감사인 지정은 ① 회계법인별 '감사인 점수*'를 산출하고, ② 회사 배정 시마다 일정비율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
 - * 회계법인 내 회계사 수,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력,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체계, 감사 업무의 매출액 비중 등을 반영하여 감사인 점수 산정
-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배정 시 감사인 지정점수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
 -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들 간에도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위험, 감사 투입 필요인력, 감사보수 등에 큰 차이가 있으나,

-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**Big 4 회계법인에 다소 유리하게 운영***되고 있는 측면

* Big4 지정 비중 : ('21) 36% → ('22) 43% → ('23) 51% → ('24) 54.8%

(참 고)

< ①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>

$$\text{감사인 점수} = \text{소속 회계사 인원수}^1 \times \text{차감 회계감사 외 매출 비중}^2 \times \text{\Delta감점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}^3 \times \text{+가점 품질관리수준 우수 평가}^4$$

- 1) (경력별 가중치) 수습 40, ~2년 80, 2년~ 100, 10년~ 110, 20년~ 120, 30년~ 110, 40년~ 100
- 2) (회계감사 매출비중별 차감율) 40~50% 3%, 30~40% 6%, 20~30% 9%, 10~20% 12%, ~10% 15%
- 3) (미이행 권고사항 개수별 차감율) 미구축 또는 미운영 2%,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%
- 4) (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) 상위 15% 이내 & 85점 이상 10%, 상위 30% 이내 & 80점 이상 5%

< ②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>

$$\text{배정 후 감사인 지정점수} = \frac{\text{배정 전 감사인 점수}}{1 + \text{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} \times \text{규모별 가중치}^*}$$

* (현행) 자산 2조원 이상은 3배, 5천억원 ~ 2조원은 2배, 5천억원 미만은 1배

< ③ 감사인 群 분류체계 기준 >

군	법인 수	소속회계사 수	품질관리인원의 기준 대비 규모	손해배상능력	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			
					0	1천억	5천억	2조
가	4	500인 ↑	140% ↑	1,000억원 ↑	■	■	■	■
나	14	100인 ↑	140% ↑	100억원 ↑	■	■	■	■
다	21	40인 ↑	120% ↑	10억원 ↑	■	■	■	■
라	1	그 밖의 회계법인			■	■	■	■

* (회계사수 40~70명) 1명 (~100명) 2명 (~300명) 2명 + 100명 초과인원의 2% (301명~) 6명 + 300명 초과인원의 1%

- ⇒ (개선) 감사인 지정점수에 적용되는 가중치 및 지정제외점수를 감사 보수 및 감사투입요소, 감사품질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
- 자산 5~10조원, 10조원 이상 구간을 각각 신설하고, 5~10조원은 가중치 4배(80점),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(100점)를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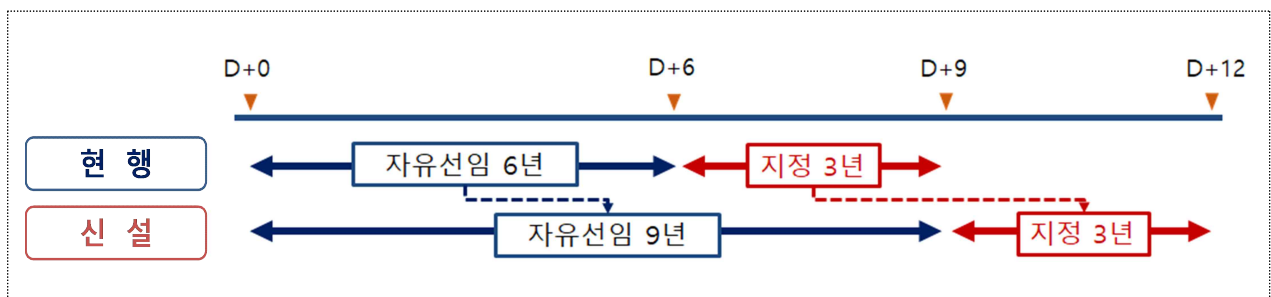
감사인 지정시 자산규모별 가중치 및 지정제외점수 개선

가중치 (지정제외점수)	자산 5천억미만	5천억~2조원	2조원~5조원	5조원~10조원	10조원 이상
현행	1배 (20점)	2배 (40점)		3배 (60점)	
개선	1배 (20점)	2배 (40점)	3배 (60점)	4배 (80점)	5배 (100점)

II 회계·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제도

가 지정유예제도 개요

- **(추진배경)** 기업의 회계·감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→ 근본적 회계투명성 제고
 - 주기적 지정제도는 감사인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, 예외없는 일률적 적용에 대한 비판 제기
- **(추진경과)**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 완화 방침을 발표('24.4월)한 이후 지정유예 방안 및 평가기준(안) 공개('24.12월)
 - 회계·감사 지배구조 평가 및 지정유예 근거법규 마련·시행('25.5월)
- **(유예효과)** 회계·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*
 - * (원칙) "6년 자유선임 + 3년 지정" → (우수기업) "9년 자유선임 + 3년 지정"



- **(선정방식)**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계·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“절대평가” 방식으로 우수기업 선정
- **(일정)** ['25.6월] 유예신청 접수 → [7~8월] 평가위원회 평가 → [9월] 증선위 의결 → ['26년~] 유예적용
 -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* 전까지 3년간('25~'27년) 지정유예 신청 및 유예대상을 선정하고, 제도개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운영
 - * '27년부터 원점 재검토 준비에 착수 → '28년 재검토 결과에 따른 법·제도 개선 추진

나

평가 및 유예방식

□ (신청대상) 주기적 지정 대상인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*

* '24년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는 총 749개사

- 다만, 新외감법 시행('18년) 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등을 통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*로 한정

*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될 '25년에는 상장회사 중 약 79%가 1년 이상 지정감사 예상

□ (평가주체) 민간위원 중심으로 외부 평가위원회*를 구성하고,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(주관)·ESG기준원(협조) 평가실무 지원

* 금융위, 금감원, ESG기준원, 회계학회, 한공회, 상장협, 코스닥협 추천(7인)
→ 중립기관 3곳, 기업계 2곳, 회계업계 2곳의 추천을 받아 중립적 구성

□ (평가절차) 결격사유 자체판단 후 신청 → 평가 → 유예 결정

① (신청) 회사가 결격사유 판단 후 확인서·증빙과 함께 유예신청

※ 감사위원의 임기, 감사계약 체결주기 등으로 평가기준 즉각 충족 곤란시
확약서, 정관·내규개정 등 대체수단에 의한 평가 허용 → 미이행시 유예결정 취소

② (평가) 실무지원기관이 실무안 마련 후, 평가위원회가 최종 평가

③ (유예) 증선위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예대상 회사 최종 결정

< 회계·감사 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>



□ (유예적용) 유예대상 회사는 유예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(1회 한정) → 이후에는 감사인 지정

-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 준수 필요 → 미충족 시 즉각 유예 취소

※ 유예대상회사에 대해 ①정기점검(유예대상회사 전체)과 ②수시점검(조건부 유예대상회사, 유예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회사)으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실시 예정

참고 1

지정유예 적용사례

- ◇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는 효과
(자유선임+지정 기간 : “6+3” ⇨ “9+3”)

□ (사례1) '17~'19년 직권 지정 이후, '20~'25년 감사인 자유선임 中

- '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 시,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'26~'28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

※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종료 시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당시 충족 요건 준수 필요(아래 사례 모두 동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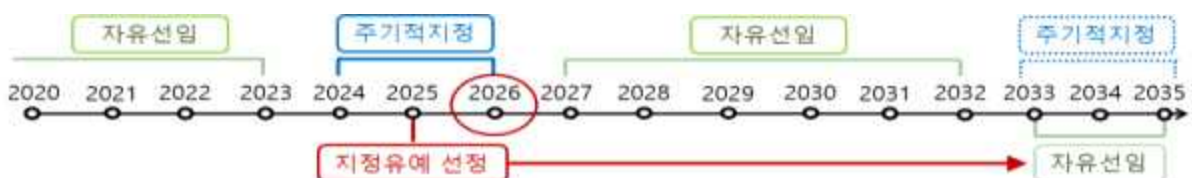
□ (사례2) '20~'22년 주기적 지정 이후, '23~'28년 감사인 자유선임 中

- '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 시,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 시기인 '29~'31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



□ (사례3) '23년까지 자유선임 이후, '24~'26년 주기적 지정 中

- '25년에 지정유예 신청 및 선정 시, **진행 중인 지정감사 3년을 마치고**,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시기인 '33~'35년에 감사인 자유선임
- 원칙적으로는 지정 3년차인 '26년부터 유예가 적용되어야 하나, 감사인 선임 주기(3년) 등을 고려하여 **'26년까지는 지정감사 유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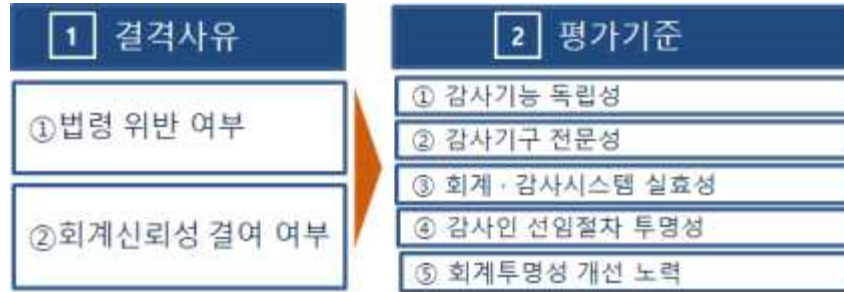


다

평가기준

◇ (요건) ①결격사유 + ②평가기준

< 회계·감사 관련 지배구조 평가기준 체계 >



1. 결격사유

- ① **(법령 위반)** 과거 3년 이내 **횡령·배임, 외부감사법, 자본시장법**(불공정 거래, 공시 위반) 등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의 **횡령·배임혐의 사실 공시***, 회사에 대한 **행정청 제재처분, 유죄판결** 등 발생한 경우

※ 거래소 공시기준

-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의 횡령·배임혐의가 발생(공소제기) 또는 사실로 확인(법원판결)된 때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 필요
- 임원은 금액과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고, 직원은 자기자본의 5% [(코스피) 자산 2조 이상 회사 2.5% (코스닥) 자산 2천억 이상 회사 3%] 이상 공시

- (예외) 신청 이전에 **횡령·배임 무죄 판결** 관련 공시가 있거나, **외감법·자본법 무죄·처분취소 확정판결, 경미***한 법령위반 등 제외

* 금융위, 증선위, 금감원장, 한공회 등이 경고·주의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

- ② **(회계신뢰성 결여)** 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①**감사의견***이 **적정**이 아니거나, ②**재무제표를 재작성****한 사실이 있거나, ③**평가기준일**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

* 연결·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외부감사

** 회계오류에 대한 재작성과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한 경우 포함

- (예외)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, 재작성 금액이 **중요성 금액*** 미만인 등 경미한 경우 제외

* 외부감사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중요성 금액

2. 평가기준

* 추후 평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변경 가능

□ 회계·감사와 관련한 5대 분야, 17개 항목으로 구성

- [5대 분야] ① 감사기능 독립성, ② 감사기구 전문성, ③ 회계·감사시스템 실효성, ④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, ⑤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
- [17대 항목] 평가분야별로 감사기구의 독립성·전문성, 내부회계 관리제도(규정·조직)의 효과성,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세부항목

[평가항목 설계 원칙]

- ① 기업 지배구조 개선유인 제고를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 명확화
 - ②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예측가능성 제고
 - ③ 회계·감사 관련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되, 자체 개선노력 반영
 - ④ 즉시시행이 어려운 경우, 정관·내규 반영 등 구속력있는 방법 인정
- 1,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 시 지정유예

< 회계·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>
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
감사기능 독립성 (300)	1) 내부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* 1인 분리선출 100점, 2인 이상 200점	200
	2) 내부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	50
	3) 외부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	50
감사기구 전문성 (200)	4) 회계·재무전문가 규모	50
	5)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	50
	6)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	100
회계·감사시스템 실효성(250)	7) 회계·감사지원조직* 규모(상대평가) * 내부회계관리제도부서 인력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	50
	8) 회계·감사지원조직 구성원 숙련도(상대평가)	40
	9) 전담지원조직 전문성(회계전문가 규모)	40
	10)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* 등기임원 60 / 비등기임원 40 / 그 외 0	60
	11)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·임면동의(협의)권	60
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(150)	12) 감사인 선임·공모절차 투명성	100
	13) 감사인 선임·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	(최대 △50)
	14)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·객관성	50
회계투명성 개선노력 (100)	15)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(정성평가)	100
[가점] 외부 표창(+50)	16) 회계투명성·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·표창	(최대 50)
[감점] 사회적 물의(△50)	17) 위법·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	(최대 △50)
합 계		1,000 (최대 1,050)

1] (독립성: 300점) ^{내부} 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^{외부} 감사업무와 감사인 선임의 분리

-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감사인 선임과 회계감사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

- ※ 지배구조 모범규준(ESG기준원, '21.8월) : 감사위원 중 과반수 분리선출 권고
 감사위원회 모범규준(ESG기준원, '18.5월) :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 권고
- ※ KOSPI 200 기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('23년) : (1인) 192개사, (2인 이상*) 8개사
 * 정관에 "1명 이상"으로 규정하고 2인 이상 분리선출한 경우 포함
- ※ KOSPI 200 기준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인 기업의 비중: 97.1%

(평가1)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따라 1인 100점, 2인 이상 200점

- 감사위원 임기 등으로 실제 분리선출하지 않더라도 정관변경 등을 완료한 경우에 점수 부여
- ※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**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 의무**(2인 이상 분리선출을 위해서는 정관 기재 필요)

(평가2)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시 50점

- 법상 의무(2/3이상)보다는 많으나 전원은 아닌 경우 50점의 1/2인 25점 부여(예, 5인 감사위원회로, 사외이사가 4명인 경우)
- ※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**2/3이상 의무**

(평가3)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외부감사인 선임 완료 시 50점

- ※ (감사인 선임기한) [자산 2조 이상 상장사] 대상 사업연도 개시 이전
 [자산 2조 미만 상장사] 대상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

② (전문성: 200점) 감사위원회 내 회계·재무전문가 참여수준

- 회계부정 사전 적발·예방을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 필요

※ 감사위원회 모범규준(ESG기준원)

- (감사위원회) 회계·재무전문가 2인 이상 포함
- (감사위원) 회계기준·감사, 내부통제, 리스크관리 등 재무제표 관련 충분한 지식·경험
- (위원장) 상당한 수준의 회계·재무 지식,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

※ 美 SEC의 내부통제기준(SOX, Sarbanes-Oxley Act)상 감사위원 전문성 기준

☞ 미국 SEC는 아래의 사항을 재무전문가(Audit Committee Financial Expert)의 요건으로 제시(section 407)

- ①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이해, ② 회계추정, 충당금·준비금 등 적용·평가 능력
- ③ 회사와 비교할만한 수준·난이도의 재무제표 작성·감사·분석·평가·감독 경험
- ④ 재무보고 내부통제·절차에 대한 이해, ⑤ 감사위원회 기능 이해 등

※ KOSPI 200 기준 회계·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 수('23년): 1.4인(41.2%)
(회계·재무전문가 외에 학계 21.7%, 법률전문가 17.4%, 재계 9.4%, 관료 5.2% 등 순)

< '회계·재무전문가'의 상법상 요건별 실제 선임 현황(KOSPI 200 기준) >

회계·재무 전문가 유형	① 회계사 5년↑	② 회계·재무 석사↑ & 조교수↑, 5년↑	③ 상장사 회계·재무경력 임원 5년↑/직원 10년↑	④ 금융기관·정부 등 경력 5년↑
수(비중)	62명(23.9%)	95명(36.7%)	13명(5%)	89명(34.4%)

(평가4) 회계·재무전문가 2인 이상 둔 경우 50점

(평가5) 회계전문가*를 1인 이상 둔 경우 추가점수 50점

(평가6) 감사위원장이 회계전문가*인 경우 100점

* 회계전문가의 구체적 요건은 (평가9) 관련 회계전문가 요건(안) 표 참조

※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의무

③ (회계·감사시스템 실효성: 250점) 지원조직 규모, 전문성·독립성

-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와 경력을 가진 회계·감사 지원조직*이 필요

* 재무정보 및 회계장부를 통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 및 내부감사부서,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(영업팀, 구매팀 등 현업부서 구성원은 제외)

- 아울러, 비상근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전담지원조직*이 전문적·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

*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을 업무로 하면서,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부서로,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·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 판단

※ 감사위원회 모범규준(ESG기준원)은 ①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원급, ②내부감사부서의 적절한 수 및 전문성 확보, ③감사위원회의 책임자 임면동의·평가권 보유 권고

※ KOSPI 200社 중 내부감사부서 설치 회사는 167개(다만, 명칭·역할·기능·업무범위 등은 일률적이지 않음)

※ 상장사의 회계·감사지원조직 규모비중은 평균 0.7%('23년도 기준)
(자산 2조 이상 0.2%, 5천억 이상 0.8%, 1천억 이상 1.4%, 1천억 미만 2.9%)

(평가7) [규모] 임직원 현원 대비 비율*에 따라 최대 50점

*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인원수 +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× 2 (가중치 부여)

< 회계·감사지원조직 규모별 점수(상대평가* 기준) >

신청회사 중 점수	상위 20%	상위 40%	상위 60%	그 외
	50	40	30	20

* 자산규모별(2조 이상, 5천억~2조, 1천억~5천억, 1천억 미만)로 나누어 평가하되, 필요시 배점조정 및 절대평가 전환 검토

(평가8) [경력] 회계·감사지원조직 평균근무연수*에 따라 최대 40점

* "회사 내 근무연수 + 타 회사 포함 회계·감사업무 경력" 로 계산 (회계·감사업무 경력 가중치가 2배)

< 회계·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근무연수별 점수(상대평가* 기준) >

신청회사 중 점수	상위 20%	상위 40%	상위 60%	그 외
	40	30	20	10

* 필요시 배점조정 및 절대평가 전환 검토

(평가9) [전문성]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*(공인회계사 등)가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0점씩 최대 40점

- * ①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, ② 회계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, ③ 그에 준하는 회계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자 등

(평가10) [위상]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이 임원급인 경우 60점

- * 등기임원 60 / 비등기임원 40 / 그 외(부장급 이하) 0

(평가11) [인사상 독립성]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 평가·임면 동의(협의)권*, 경영진의 불이익조치 사실에 따라 60점**

- * 부서장 또는 구성원 한쪽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거나, 평가 또는 임면 중 하나에 대해서만 있는 경우 각각 1/2씩 적용(예, 부서장에 대한 평가동의권만 있으면 15점)

- ** 경영진의 인사·평가상 불이익 조치 사실 확인시 최대 1/2 범위인 30점 이내 감점

※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회사는 KOSPI 200 기준 55개사(33.3%)

< 회계전문가 요건(안) >

	감사위원		회계감사지원조직
	회계 또는 재무전문가	① 회계전문가(안)	② 회계전문가(안)
1호	한국공인회계사 경력 ¹⁾ 5년 이상	좌동	한국공인회계사 자격
2호	연구원 ⁴⁾ 또는 교수로서, 회계·재무 분야 경력 5년↑ 및 회계·재무 관련 석사 ²⁾	좌측에 해당하면서, 회계경력 3년↑ 및 회계 관련 석사 ²⁾	회계학 박사 ²⁾ 연구원 ⁴⁾ 또는 교수로서, 회계경력 3년↑ 및 회계관련 석사 ²⁾
3호	상장회사 회계·재무업무 경력 임원 5년↑ 직원 10년↑	좌측에 해당하면서, 회계업무 경력 임원 3년↑ 직원 7년↑	상장회사 회계 업무 경력 임원 3년↑ 직원 7년↑
4호	금융기관, 정부 등 ³⁾ 경력 회계·재무 관련 감독업무 5년↑	좌측에 해당하면서, 회계 관련 감독업무 3년↑	금융기관, 정부 등 ³⁾ 회계 감독업무 경력 3년↑
5호	금융업권협회 근무 회계·재무분야 경력 5년↑	좌측에 해당하면서, 회계분야 경력 3년↑	금융업권협회 경력 회계분야 3년↑
	N/A	N/A	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등 평가위가 개별 검토·인정

* 개업, 휴업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기초로 공인회계사 자격 관련 업무 판단

** 회계·재무학이 명시된 경우는 명시된대로, 경영학·경제학 등은 학위논문 관련성 기준

**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금융감독원, 거래소, 금투업관계기관, 금융기관

**** 국가·지자체·대학교 등 산하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 근무 경력 인정
(연구기관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(기업부설연구소) 기초연구법 제14조제2항

4 (감사인 선임절차: 150점) 감사인 선임시 감사품질 우선 고려

-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
- ①회사가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을 개별접촉해 제안요청하는 경우, 객관적 선임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,
- ②감사인 선임 시 평가항목 중 가격지표 비중을 표준예시*보다 높이는 경우, '감사품질'보다는 지나친 '감사보수' 경쟁 발생

*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(상장협 규정)상 가격지표 비중: 10%

※ 상장사 감사보수/매출액(% , '21년) : (한국) 0.17 (미국) 0.44 (캐나다) 0.33 (유럽) 0.15

(평가12) 회사가 공모(2주이상 공고 필요)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면서 감사보수 정보(①또는② 방법)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

① 회사 추정 감사투입시간·감사보수(하한·상한·기준치 모두 가능)를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제시한 경우 100점 부여

※ 감사(위원회)는 감사보수시간, 감사투입인력 사항 문서화 필요(외감법 §10㉟)

② 최근 3년간 예정·실제 감사 투입시간 및 감사보수, 향후 감사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*을 감사 위원회 승인을 거쳐 기재한 경우 60점 부여

* (예) 회계시스템 교체로 IT 감사시간 증가 예상, 연결 내부회계 조기도입

(평가13) 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중 x 2배만큼 감점(최대 50점)

* (예) 가격지표 비중이 30%인 경우 초과비중이 20% → 40점 감점

(평가14) 회사(감사위원회)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·보수를 합리적 사유* 없이 조정 한 경우 감점
(기본점수 50점 일괄 부과 후 50점 범위 내에서 감점)

* 회사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가 정성평가하여 점수 부여

5 (자체노력: 100점) 기타 회계투명성 확보 노력(정성평가)

- 상기 평가항목 외에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, 감사위원회 구성·운영,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회계시스템 고도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별 회사의 노력·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

(평가15) 정량화는 어렵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춰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노력(인적·물적 투자 등 일체)을 정성 평가

※ (예) 감사위원 임기보장, 회사관계자 참여 없이 감사위원회 또는 사외이사간 안전심의 기회 보장,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정기 교육 등

- 다만, 외부감사법에 따라 차등적·순차적으로 도입한 제도 관련 아래(①~③) 자체노력 사항은 명시적 반영 (총 100점)

*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량적 점수 부여

① (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)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선출시 추가 가점 (30점)

*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분리선출 의무가 없으므로 '독립성' 분야 점수부여에 더하여 '자체노력'에 대한 가점부여

② (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)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(30점)

* 자산 1천억 미만은 외부감사 의무는 없음 ('검토'만 의무)

③ (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)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조기 도입*하여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(30점)

*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('23.6월, 회계제도 보완방안)
(자산 5천억~2조원 회사: '24 → '29, 자산 5천억 미만 회사: '25 → '30)

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

※ 평가 15의 합계는 ①~④을 합하여 "⑤ 자체노력"에 배정된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추가 가점 · 감점 사항

1) (가점 : 50점) 회계투명성·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·표창

(평가16)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·표창을 받은 경우 점수 부여(합산 최대 50점)

- ① (거래소 밸류업 우수표창) 최근 3년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50점, 그 외 표창 30점
- ② (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) 최근 3년내 A등급 이상을 유지 하면서, S(A+) 등급을 1회 이상 획득한 경우* : 50점(30점)
- ③ (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*) 최근 3년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30점, 그 외 표창 15점
- ④ (회계의날) 최근 3년내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계의날 표창 수상 시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20점
- ⑤ (거래소 지배구조공시 우수법인) 최근 3년 내 선정시 10점

* ('24년 기준) [S등급] 0개, [A+등급] 일반회사 11개, 금융회사 2개

* ESG기준원의 지배구조·주주친화경영 평가결과 500점 반영(총 2,700점 만점)
[정부기관장표창 이상] 3 (총리, 금융위, 중기부) [그 외] 11 (금감원 1, 거래소 3, 코협 7)

* ('24년 기준) 5개 선정 (지배구조 공시대상: 자산 5천억↑ 코스피 → '26년부터 코스피 전체)

※ 이 외의 포상·표창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포상의 평가요소나 성격·훈격 등을 기초로 가점 부여 여부 및 수준 판단

☞ (예외) 회계·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분식 등 우려가 큰 경우* 가점 적용 제외

*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감리착수 개연성이 높은 경우(금감원)

2) (감점 : 50점) 회계투명성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등

(평가17) 평가위원회가 회계투명성·지배구조와 관련한 회사의 위법·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점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

* (예) 횡령·배임이 발생하였으나 횡령·배임 금액이 거래소 공시기준에 미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감점 고려